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 업무 추가 >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64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u><신설></u> 3. 4. (생략) ② (생략)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u>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최근 선원인력 현황을 보면, 외국인 선원 대비 국적선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선원의 고령화지수가 급속히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 및 임금의 상대적 감소 등을 이유로 신규인력의 5년내 이직률이 약 78% 수준에 이르는 등¹⁾ 선원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국적선원 및 외국인 선원 수]

(명/비율(%))

구 분	2000년	2010년	2022년
국적선원	58,818명(88.5%)	38,758명(68.6%)	31,867명(53.0%)
외국인 선원	7,639명(11.5%)	17,558명(31.4%)	28,281명(47.0%)

*자료: 해양수산부

- 특히, 국적선원 감소 문제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법」으로 인하여 외항상선 운항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²⁾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국적선원 신규 유입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근로조건 개선, 소득·복지 증진, 교육훈련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음.

1)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계열 대학, 해사고 등을 통해 취업한 해기사 중 78%가 5년내 육상직으로 이직하고 있음

2) 해기사협회에 따르면 현 추세 지속시 선장·기관장 부족으로 2032년에는 국내 선사 외항상선 1,500여척 중 600여척만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에는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는 등 각종 공제·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구 분	내 용
「국제선박 외국인 선원 승무기준 및 범위」	제2조(국제선박의 구분) ① 국제선박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필수선박"과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지정국제선박", 그 외 "일반국제선박"으로 구분한다. 제3조(승무기준 및 범위) ① 제2조의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무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u>적당 부원 6명 이내로 한다.</u> 2. 지정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은 <u>적당 부원 8명 이내 또는 선장·기관장을 제외한 직원 1명과 부원 7명 이내로 한다.</u> 3. 일반국제선박에는 <u>선장·기관장을 제외한 선원 전체를</u> 외국인 선원으로 승무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업무에 실질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선원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현행법의 제108조(선원의 직업안정업무) 제1항제1호·제2호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취업 알선·모집·지원, 등록과 실업대책 등에 관한 “선원인력 확보와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선원의 처우개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조제목을 수정(선원의 직업 안정업무→ 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어 보임.

참고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³⁾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⁴⁾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하게 정부의 인력확보 책무 규정에서 정부로 하여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9

- 3)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